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23
----------	-------

발의연월일 : 2024. 1. 19.

발 의 자 : 엄태영 · 김상훈 · 최춘식
이명수 · 홍문표 · 지성호
한무경 · 김학용 · 노용호
황보승희 · 이 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은 제외한다.

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	-----
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	-----
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
· 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	-----
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	-----
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
을 감하여 산정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이전소득</u>	4. <u>이전소득. 다만, 다음 각 목</u>
	<u>의 소득은 제외한다.</u>
	<u>가. 「기초연금법」 제5조에</u>
	<u>따른 기초연금액</u>
	<u>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u>
	<u>지원에 관한 법률」 제12</u>
	<u>조, 제14조, 제15조, 제15</u>
	<u>조의2, 제16조의2 및 제16</u>
	<u>조의3에 따른 보상금, 생</u>

② · ③ (생략)	<u>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u> <u>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생</u> <u>활조정수당</u> <u>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u> <u>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u> ② · ③ (현행과 같음)
-------------------	--